

# 하남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 : 박선미 의원

발의일 : 2022. 7.

## 1. 제안이유

- 「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하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용어의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3조)
- 산림교육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규정(안 제4조)
- 유아숲체험원 사업추진 및 구성에 관한 규정(안 제5조 ~ 6조)
-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7~8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소병찬)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산림교육계획의 수립·시행, 유아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검토 결과,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